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배당1Q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8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유나무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8일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유나무 (생략)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업데이트)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일본배당 증권투자신탁(제1호) [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형 C-E 신설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E : BW713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6.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6. 종류 C-E 수익증권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내지 제7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내지 제7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분의 5.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분의 0.18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주석사항 · 종류 AG, CG 수익증권의 보수 세부내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주석사항 · 종류 AG, CG, C-E 수익증권의 보수 세부내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E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C-E / BW71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E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C-E / BW71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8일 - 종류형 C-E 수익증권 신설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table>
<tr><td>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종류 C-E 신설></td><td><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C-E</td><td>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E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C-E</td><td>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E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table><tr><th rowspan="2">구 분</th><th>지급비율</th></tr><tr><th>종류 C-E</th></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E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E 신설></td>
<td>
<table>
<tr><td>선취판매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후취판매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환매수수료</td><td>- 90일미만 : 이익금의 70%</td></tr>
</tabl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지급비율(연간, %)</th></tr>
<tr><th>종류 C-E</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550%</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0.600%</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0.050%</td></tr>
<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18%</td></tr>
<tr><td>보수합계</td><td>1.218%</td></tr>
<tr><td>기타비용</td><td>실비</td></tr>
<tr><td>총보수및비용</td><td>1.218%</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r>
</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
<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
<tr><td>종류 C-E</td><td>125</td><td>394</td><td>690</td><td>1,570</td></tr>
</table>
</td>
</tr>
<tr>
<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
</tr>
<tr>
<td>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
<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td>
<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td>
</tr>
</table>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라이프싸이클2040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참고지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1. 하나UBS라이프싸이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하나UBS라이프싸이클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4.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4항 1. <삭제> 1.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삭제> 2.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최초설정일부터 10년까지 판매수수료	**보수** 최초설정일부터 10년 경과후부터

	(생략) 최초설정일부터 10년까지 환매수수료 (생략) 합성총보수비용 **※ 주석사항** · 최초설정일부터 10년 경과 후 20년까지, 최초설정일부터 20년 경과 30년까지 및 최초설정일부터 30년 경과후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0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년까지 (업데이트) 최초설정일부터 10년 경과후부터 20년까지 (업데이트) <삭제> **※ 주석사항** · 최초설정일부터 10년까지, 최초설정일부터 20년 경과 30년까지 및 최초설정일부터 30년 경과후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및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상기의 참고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투자전략** 하나UBS라이프싸이클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라이프싸이클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1)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이 집합투자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조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삭제>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삭제>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각 투자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6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6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8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참고지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생략)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의 자동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하여 변동성 축소 및 투자기간의 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생략)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의 자동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하여 변동성 축소 및 투자기간의 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운용전략 (3) 참고지수 (KOSPI*45%)+(KIS 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 국공채 45%+CD 10%)*55%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및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삭제> <삭제> 가. 운용전략 (3) 참고지수 [KOSPI 수익률 * 60%]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가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45%)+(KIS 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 국공채 45%+CD 10%)*5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상기의 참고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나.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 수익률 * 60%]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지수는 2017 년 9 월 8 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9 월 7 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 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 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각 투자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오퍼레이션 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62%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6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합성총보수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삭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주2) 이 투자신탁의 참고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주2)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미국토탈일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9 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제6호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6호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8일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투자>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투자>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별첨 참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0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별첨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 별첨 >

[변경 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라이프싸이클2020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참고지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AG : BU858 종류CG : BU859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7. 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8.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1. 하나UBS라이프싸이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하나UBS라이프싸이클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4.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4항 1. <삭제> 1.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삭제> 2.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7. 종류 AG 수익증권 8. 종류 CG 수익증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제3조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1.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제39조(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제2기: 최초설정일로부터 10년(10년째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경과후] 4. [종류AG 수익증권] (신설 2017.09.08) 가.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8 나.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 다.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5. [종류CG 수익증권] (신설 2017.09.08) 가.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8 나.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3 다.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2항 [제2기: 최초설정일로부터 10년(10년째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경과후] 2.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15% 이내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합성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보수포함) **※ 주석사항** <추가>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0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수** (업데이트) <삭제> **※ 주석사항** · 종류 AG 및 C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참고지수**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및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참고지수** [KOSPI 수익률 * 4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60%] 주1)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가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상기의 참고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투자전략** 하나UBS라이프싸이클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라이프싸이클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 1)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가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 수익률 * 4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60%]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삭제>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 1)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4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60%]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투자정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각 투자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04%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삭제>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2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U858 CG BU859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U858 CG BU859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table>
<tr><td>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추가)</td><td>2017년 09월 08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참고지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CG 신설>

다. 모자형 구조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종류 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종류 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
다. 모자형 구조
<삭제></td></tr>
</table>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생략)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의 자동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하여 변동성 축소 및 투자기간의 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생략)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의 자동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하여 변동성 축소 및 투자기간의 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3) 참고지수 **(KOSPI*45%)+** **(KIS 채권평가 KOBI 120 45% + KOBI 120국공채 45%+CD 10%)*55%**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및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가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45%)+(KIS 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삭제> <삭제> 가. 투자전략 (3) 참고지수 [KOSPI 수익률 * 4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60%] 주1)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가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 수익률 * 4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60%]를

	10%)*5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상기의 참고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나.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각 투자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오퍼레이션 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04%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29%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

<table>
<tr><td></td><td>(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d>(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

(3) 환매수수료
<종류 AG, CG 신설></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
3. 환매수수료
종류 AG, 종류 CG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G, CG 신설></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tr><th rowspan="2">투자기간</th><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종류형</th><th rowspan="2">지급시기</th></tr><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tr><td rowspan="3">최초설정일부터 10년경과후</td><td>선취판매수수료</td><td>납입금액의 0.15%이내</td><td>없음</td><td>매입시</td></tr><tr><td>후취판매수수료</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d>환매시</td></tr><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2">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td><td></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주석 추가>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G, CG 신설>

<

		종류AG	66	142	226	477
		종류CG	37	116	203	461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주2) 이 투자신탁의 참고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4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60%] 주2)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				

		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라이프싸이클2030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참고지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투협 펀드코드	<추가>	종류 AG : BW709 종류 CG : BW710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7. 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8.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1. 하나UBS라이프싸이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하나UBS라이프싸이클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4.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4항 1. <삭제> 1.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삭제> 2.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7. 종류 AG 수익증권 8. 종류 CG 수익증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제3조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1.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제2기: 최초설정일로부터 10년(10년째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경과 후부터 20년 까지] 4. 종류 AG 수익증권 (신설 2017.09.0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5. 종류 CG 수익증권 (신설 2017.09.0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제3기: 최초설정일로부터 20년(20년째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경과후] 4. 종류 AG 수익증권 (신설 2017.09.0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5. 종류 CG 수익증권 (신설 2017.09.0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2항 [제2기: 최초설정일로부터 10년(10년째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경과후부터 20년 까지] 2.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2% [제3기: 최초설정일로부터 20년(20년째 되는날이 비영업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경과후] 2.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15%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최초설정일부터 10년까지 판매수수료 (생략) 최초설정일부터 10년까지 환매수수료 (생략) 합성총보수비용 (생략)	**보수** 최초설정일부터 10년 경과후부터 20년까지 (업데이트) 최초설정일부터 10년 경과후부터 20년까지 (업데이트) <삭제>

	※ 주석사항 <추가> · 최초설정일부터 10년 경과 후 20년까지 및 최초설정일부터 20년 경과 후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0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석사항** · 다른 종류형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설정일부터 10년까지 및 최초설정일부터 20년 경과 후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및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10%)*5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상기의 참고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투자전략** 하나UBS라이프싸이클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라이프싸이클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1)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2. 투자전략** <삭제>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삭제>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각 투자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10%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32%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709 CG BW7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709 CG BW71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8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참고지수 변경

<table>
<tr><td></td><td></td><td>-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CG 신설>

다. 모자형 구조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
다. 모자형 구조
<삭제></td></tr>
</table>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생략)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의 자동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하여 변동성 축소 및 투자기간의 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생략)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및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의 자동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하여 변동성 축소 및 투자기간의 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라이프싸이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운용전략 (3) 참고지수 (KOSPI*45%)+(KIS 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 국공채 45%+CD 10%)*55%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채권 및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가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45%)+(KIS 채권평가 KOBI 12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삭제> <삭제> 가. 운용전략 (3) 참고지수 [KOSPI 수익률 * 60%]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를 비교할만한 비교지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단순한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KOSPI 수익률 * 60%]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5%+KOBI 120 국공채 45%+CD 10%)*5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상기의 참고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나.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40%]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지수는 2017 년 9 월 8 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9 월 7 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 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 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각 투자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오퍼레이션 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서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10%임에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32%에

<table>
<tr><td></td><td>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d>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

<br

최초설정일부터 20 년경과후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15%	-
	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합성총보수비용 (생략)

<종류 AG, CG 신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삭제>

투자기간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종류	종류 AG	종류 CG
최초설정일부터 10 년 경과후 20 년까지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	0.300%
	판매회사보수	0.150%	0.31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총보수	0.498%	0.658%
	기타비용	실비	실비
	총보수 및 비용	0.498%	0.658%
	증권 거래비용	실비	실비
최초설정일부터 20 년 경과후	집합투자업자보수	0.180%	0.180%
	판매회사보수	0.060%	0.13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총보수	0.288%	0.358%
	기타비용	실비	실비
	총보수 및 비용	0.288%	0.358%
	증권 거래비용	실비	실비

<삭제>

<table>
<tr><td></td><td>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0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종류 AG, CG 신설></td><td>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table><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종류AG</td><td>71</td><td>181</td><td>301</td><td>661</td></tr><tr><td>종류CG</td><td>67</td><td>213</td><td>373</td><td>848</td></tr></table></td></tr>
<tr><td>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td><td>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참고지수 :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
주2) 이 투자신탁의 참고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td><td>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 * 60%]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40%]
주2) 이 참고지수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의 참고지수는 (KOSPI*45%)+(KIS채권평가 KOBI 120 45%+KOBI 120국공채 45%+CD 10%)*5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td></tr>
<tr><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r><td>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td><td>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td></tr>
</table>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미국토탈일드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09월 0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AG : BW711 종류CG : BW712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3항 <추가>	제3항 15. 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6. 종류 C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항 <추가>	제1항 15. 종류 AG 수익증권 16. 종류 CG 수익증권

제39조 (보수)	제3항 <추가>	제3항 [종류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6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종류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00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20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제40조 (판매 수수료)	제2항 <추가>	제2항 3.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 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W, S, C-P, C-P2 C-PE, C-P2E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 종류 C2~C4, C-F, W, S, C-P, C-P2 C-PE, C-P2E, AG 및 C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기구의 투자정보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89%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표지	투자 위험 등급 : 2등급(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위험 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711 CG BW71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AG, CG 신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G BW711 CG BW71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9월 08일 - 클린클래스(종류 AG, CG) 신설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table>
<tr><td>기구에 관한 사항</td><td>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G, CG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table><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table></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투자>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8 조 제 5 호 내지 제 8 호, 제 19 조제 2 호 내</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투자>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td></tr>
</table>

	지 제 5 호 및 제 6 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별첨 참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89%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별첨 참조>

<table>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G, CG 신설></td>
<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tr><th>종류별</th><th>가입자격</th></tr>
<tr><td>A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td></tr>
<tr><td>CG</td><td>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신탁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익증권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able></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G, CG 신설>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이내(종류 A-E 는 0.5%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지급비율(연간, %)</th><th rowspan="2">지급시기</th></tr>
<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
<tr><td>선취판매수수료</td><td>납입금액의 0.5%이내</td><td>없음</td><td>매입시</td></tr>
<tr><td>후취판매수수료</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d>환매시</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2">환매수수료 없음</td><td></td></tr>
</table>
주)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td>
</tr>
</table>

<table>
<tr>
<td></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종류 AG, CG 신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종류 AG, CG 신설></td>
<td>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급비율(연간, %)</th></tr>
<tr><th>종류 AG</th><th>종류 CG</th></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0.20%</td><td>0.20%</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0.36%</td><td>0.52%</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0.03%</td><td>0.03%</td></tr>
<tr><td>일반사무관리보수</td><td>0.02%</td><td>0.02%</td></tr>
<tr><td>보수합계</td><td>0.61%</td><td>0.77%</td></tr>
<tr><td>기타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
<tr><td>총보수및비용</td><td>0.61%</td><td>0.77%</td></tr>
<tr><td>합성총보수및비용</td><td>1.25%</td><td>1.41%</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실비</td><td>실비</td></tr>
</table>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table>
<tr><th>구분</th><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
<tr><td>종류AG</td><td>178</td><td>454</td><td>758</td><td>1,661</td></tr>
<tr><td>종류CG</td><td>145</td><td>456</td><td>798</td><td>1,818</td></tr>
</table>
</td>
</tr>
<tr>
<td>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td>
<td>(생략)</td>
<td>(업데이트)</td>
</tr>
<tr>
<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
<td>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
</tr>
</table>

< 별첨 >

[변경 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